Issue Commen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6월 27일

퍼스트솔라(FSLR.US)
시장 TP 196.79 USD I CP 152.14 USD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US)
시장 TP 321.58 USD I CP 320.17 USD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6월 30일 I 글로벌 산업 분석

미국 에너지

OBBB vote-a-rama 진행 중: 미국 태양광/원자력 코멘트

OBBB(One Big Beautiful Bill Act) vote-a-rama(무제한 수정 제안) 진행 중

6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IRA 세제개편 초안 공개 이후 28일 940페이지 분량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수정안이 발표되며 주말 사이 첫 표결이 이루어졌다. 찬성 51: 반대 49 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Test Vote(절차적 표결)를 통과하며 심의 개시가 결정되었다. 30일 현재 Vote-a-rama(수정 법안 이후 무제한 수정 제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7월 4일(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겠다는 기한을 앞두고 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양광] AMPC는 2033년 일몰 예정

1) 태양광과 풍력의 ITC(48E)/PTC(45Y)의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초안과 동일하다. 기존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에서 2027년 말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완공 기준만 고려할 때는 1년 앞당겨졌으나 2027년 이전에 빠르게 완공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은 더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혼재하고 있다. ITC/PTC 일몰 시점은 현행 2033년에서 2028년으로 큰 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사항은 수정의 여지가 크다. 2) AMPC(45X)는 현행, 상원 초안과 동일하게 2030년부터 점진적 축소 이후 2033년 일몰할 것으로 전망한다. PFE(금지외국단체)로부터의 물질적(material) 도움에 대한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원가 비중에서 PFE 조달 비중이 '26년 50%, '27년 60%, '28년 70%, '29년 80%, 이후에는 85% 보다 적어야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하다. 신규로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탄(metallurgical coal)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원자력] PFE 조항 추가

ZEC(45U)에는 PFE 조항이 추가됐으나 상원 초안과 동일하다. 납세자가 PFE의 일종인 SFE(중국/러시아/이란/북한)인 경우 세제개편안이 재정되는 날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SFE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 법 재정 2년 후 과세연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우려 국가(covered nation)에 의해 생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서로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연료 관련 규정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Tennessee주에서는 5월 30일, 청정에너지 세제지원정책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서명된 바 있다.

인센티브 정책을 넘어 특정 주에서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 전력 부족 속에서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원자력/탄소포집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을 진행중이다. 미국 에너지 Top-picks로 퍼스트솔라(FSLR.US),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US)를 유지한다.

도표 1.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구분

용어	구분	정의
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Specified foreign entity	- 적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과 관련되거나 그 지배를 받는 외국 단체 (2021 윌리엄 M. 손베리 국가방위수권법에서 명시된 바에 따름) - **중국/러시아/이란/북한** - 외국의 통제를 받는 단체 - Public Law 117-78 및 118-31에 따라 규율되는 단체
	Foreign-influenced entity	- Specified foreign entity의 실질적 통제 징후를 보이는 단체 - 단일 Specified foreign entity의 지분 25% 이상
Covered Nation		- section 4872(f) of 13 title 10, United States Code -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자료: EY,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2025년 6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